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549호 2020. 10. 19(월)

## 차 례

###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0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 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4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0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9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1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7
- 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고시 제9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 21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66호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 3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7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 입안 (안) 열람·공고 ----- 3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72호 보상계획열람공고 ----- 3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7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1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1003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를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완기간 내”를 “보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2조 중 “채택여부”를 “채택 여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700만원이상”을 “7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만원이상”을 “500만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0만원이상”을 “3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만원이상”을 “100

만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0만원이상”을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제4항 중 “순으”를 “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상금 및 상여금”을 “상여금”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부·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수정·보안”을 “수정·보완”으로 한다.

제20조 중 “구청장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실시후”를 “실시 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결정일 부터”를 “결정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 성과”를 “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100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단체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 (제3조제3항 관련)

### □ 항목별 기준

항 목	심 의 기 준	배 점	
음식점 30개소 이상 집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지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li> <li>- 30개소 이상 : 16점</li> <li>- 40개소 이상 : 18점</li> <li>- 50개소 이상 : 20점</li> </ul>	20	
자치기구 (상인단체) 구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단체 등 자치기구가 있다.</li> <li>- 운영기간 1년 미만 또는 미등록 : 6점</li> <li>- 운영기간 1년 이상 : 8점</li> <li>- 운영기간 2년 이상 : 10점</li> </ul>	10	
상인단체 등록 음식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인단체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li> <li>- 30개소 이상 : 6점</li> <li>- 40개소 이상 : 8점</li> <li>- 50개소 이상 : 10점</li> </ul>	10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지구 거리 상인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li> </ul>	10	
거리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리는 쾌적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li> </ul>	10	
거리의 특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음식이 있다.</li> </ul>	1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 및 사회 공헌,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li> </ul>	30	
	가. 국가 정책에 따른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의 적정성		10
	나.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 계획 수립 여부		10
	다. 주민 친화 및 사회 공헌 방안의 적정성		10

비고.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심의 기준

- 항목별 득점비율은 60% 이상 이어야 한다.
- 심사자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제3조제4항 관련)			
거 리 명		신청당시 업소수	
위 치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상인단체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 타 (변동·참고사항)			
음식문화거리 사진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1005호

###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려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에 대해 구민이 접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심사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채택등급의 결정)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은 실행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 적용범위, 주민선호도 등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부상)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상자에 대한 부상의 종류 및 보상금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 구민제안 담당업무 부서장은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의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② 채택된 창안의 소관 부서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민제안 담당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세부심사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배 점 기 준		
	우 수	보 통	미 흡
실행가능성(20)	20~15	14~10	9이하
창 의 성(20)	20~15	14~10	9이하
효율성 및 효과성(20)	20~15	14~10	9이하
계 속 성(15)	15~13	12~10	9이하
적 용 범 위(15)	15~13	12~10	9이하
주민의견(10)	10	9	8
최종평가점수	100점		

※ 단, 심사자 평균점수 70점 미만은 불채택

[별표 2]

## 부상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인원	보상금	포상	비고
최우수	1	1,000천원	구청장	채택
우수	1	700천원	구청장	채택
장려	1	500천원	구청장	채택
노력	3	200천원	구청장	채택

※ 심사결과에 따라 등급별 수상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제2쪽)

<p>⑦ 현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및 문제점, 필요성</li> <li>○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li> <li>○ 타지역 유사 사례 : 해당 유무</li> </ul>
<p>⑧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차별성 또는 독창성</li> <li>○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소요예산 포함, 비예산 가능)</li> <li>○ 추진 방법 등 실현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li> </ul> </li> </ul>
<p>⑨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주민 생활불편 해소</li> <li>○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li> <li>○ 구민생활 개선, 구민 관심도 제고 등 사회적 파급효과 등</li> </ul>

#### 작성 방법

-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 ③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 ⑦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⑧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⑨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173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주)전승건설 (대표자 고경석)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블록
  - 나. 대지면적 : 34,047m<sup>2</sup>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17,971.9355m<sup>2</sup> (지하2층, 지상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8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298,570,091천원
4. 사업기간 : 2020. 11. 30. ~ 2023. 7. 30.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7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1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중봉대로 1599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10.1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10-1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01-6	인천광역시 서구 중풍대로 1599 (금곡동)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현신생의 호를 따서 제명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6-1, 1626-12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로 57 (오류동)	20121025	"아무지고 탐스럽다"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3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2로 50 (금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두 번째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6-4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3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1-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4번길 4-16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62-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4번길 3-15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5-5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1번길 15-17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0-10-19

원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81번길 28-17 (금곡)	건물 멸실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대화자원
2	인천광역시 서구 원척로27번길 29 (가좌동)	건물 멸실	20090706	원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20 - 9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 10. 1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지정취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2. 지정내용

- 지정일 : 2020년 10월 19일
- 지정대상 및 범위(붙임 참조)

구 분	현 황	기 지정	추가 지정	비 고
도시공원	148개소	146개소	2개소	* 추가 지정 대상은 금연안내표지판 설치

※ 건강증진과-6547(2016.03.30.)호에 의거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의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흡연단속(과태료 부과) 실시함

####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개시일 : 2021년 2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4. 고시방법 : 구보,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60-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금연구역 추가 지정 현황 1부.

(붙임)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서구 관내 도시공원 지정 : 2개소

연번	구분	공원명	주소	면적(㎡)
1	도시공원	해변공원	인천 서구 청라동 산 5-19 80필지	183,914.9
2	도시공원	노을공원	인천 서구 청라동 산 5-9 78필지	225,285.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 15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0. 10.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법」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과 관련한 규정 폐지로 인한 규제 완화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서구 조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등록사항 직권 말소 조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 삭제
- 각종 감염병·재난 등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 2. 주요내용

- 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등록사항 직권 말소 조항 삭제 (제21조 삭제)
- 나. 옥외광고업사업자의 등록 관리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일부 삭제(별표 6 중 제3호 삭제)
- 다.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 조항 신설 (안 제24조제3항제3호 신설)

## 3.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9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라.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 (심곡동) 세민빌딩 4층
    - 전 화 : ☎ (032)560-4813, FAX (032)560-2749
-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4. 참고자료

- 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나. 의견제출서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법」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과 관련한 규정 폐지로 인한 규제 완화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서구 조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등록사항 직권 말소 조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 삭제
- 각종 감염병·재난 등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 2. 주요내용

- 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등록사항 직권 말소 조항 삭제 (제21조 삭제)
- 나. 옥외광고업사업자의 등록 관리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일부 삭제(별표 6 중 제3호 삭제)
- 다.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 조항 신설 (안 제24조제3항제3호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영 제15조제4호 나목” 을 “영 제15조제4호나목”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2” 를 “법 제5조의2” 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 를 “심의위원회” 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5항 중 “자에 대하여는” 을 “자에게” 로 한다.

제23조제8항 중 “제7항에” 를 “제7항까지에도” 로 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새로이” 를 “새로”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6 중 제3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제2항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② 삭제

③ ~ ⑦ (생략)

제2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삭제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④ (생략)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 ⑦ (생략)

심의위원회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삭제>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자에게 -----

⑥·⑦ (현행과 같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와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④ (생략)

⑧ ----- 제7항까지에도 -----  
-----  
-----  
-----  
-----  
-----  
-----  
-----  
-----.

제24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  
----- 새로 -----  
-----  
-----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6]

현		행	개	정	안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3. <삭 제>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 관계법령 발췌

### 「옥외광고물 관리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삭제 2016. 1. 6.>

④ 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삭제 2016. 1. 6.>

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16. 1. 6.>

⑥ 옥외광고업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6. 1. 6.>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1566호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0-246(2010.8.2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제 2019-120호(2019.5.25.)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24-66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0.10.19.~11.2.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서구청 도시개발과 방문 또는 전화(☎560-4755)
7. 열람서류: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에 비치하고 있으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571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결정(변경)

### 입안(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0. 10.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주요내용

##### 가. 시설현황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공유수면매립 2-1공구 종합환경연구단지
- 내용
  - 녹지: 완충녹지 (822m<sup>2</sup> 면적증가)

##### 나. 입안내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수도권매립지 2-1공구 종합환경연구단지	32,194	증) 822	33,01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4-16호 (2004.1.26)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2,194㎡→33,016㎡</li> <li>증) 822㎡</li> </ul> </li> <li>• 폭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m → 45m</li> <li>증) 5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환경연구단지 실시계획 변경 (국립생물자원관 진출입로, 생물 안전연구동 건설)에 따른 면적 축소 및 폭원 확장</li> </ul>

##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0 - 1572호

## 보 상 계 획 열 략 공 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금곡동 중로2-226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사업의 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44-3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226호선)
  - 명칭 : 금곡동 중로2-226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규모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시 행 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금곡동 중2-226호선 도로개설공사	2020.06.24.~ 2025.12.31.	인천 서구 금곡동 644-3번지 일원	L= 1,311m B= 15~20m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2. 사업의 근거

- 1998. 06. 12. :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고시 (인고 제1988-118호)
- 2020. 06. 24. : 실시계획인가 고시(서구 고시 제2020-107호)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 4.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 5. 보상계획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이의신청)기간 : 2020. 10. 19. ~ 2020. 11. 03. (15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기반과 도시관리팀(☎560-4485)
- 이의신청 방법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2020. 11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보상절차
  -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토지 등의 감정평가 → 손실보상협의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보상금은 당사자와 보상협약이 성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보상금 산정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장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추천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세부물건조서를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보상일정 및 열람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 사업명 : 중로2-226호선 도로개설공사(1단계)(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금곡동	662-1	임	364	22	이*학	인천시 서구 금곡동 ***				
2	~	662	임	1,434	532	이*주	인천시 서구 신동안길 ***	검단농업협동조합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권, 지상권	
3	~	649-1	전	4,057	53	유*자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번길**				
						임*숙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번길 **				
						임*주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				
						임*주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길 **				
4	~	707	도	455.1	47	국	국토교통부				
5	~	632	전	1,654	158	이*주	인천시 서구 신동안길**	검단농업협동조합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권, 지상권	
6	~	633	전	1,071	328	윤*주	인천시 서구 건지로 ***				
7	~	633-2	임	496	471	이*나	인천시 서구 완정로**번길 **	검단농업협동조합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권	
								임*건	인천시 서구 완정로**번길 **		
8	~	632-1	전	860.1	41	국	국방부				
9	~	633-1	임	298	141	차*련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10	~	684-34	구	4664.9	320	국	국토교통부				
11	~	634-17	임	63	18	이*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미등기
12	~	634-16	임	135	2	이*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미등기
13	~	636-12	임	1,207.5	397	국	국방부				
14	~	636-2	임	833.9	581	국	국방부				
15	~	630-8	임	69	10	전주*씨 소성수 파종중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	이*하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	대표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	금곡동	636-11	임	231.3	143	국	국방부				
17	~	636-1	전	568	328	국	국방부				
18	~	636	전	516.9	290	국	국방부				
19	~	636-10	임	954.3	503	국	국방부				
20	~	630-6	임	398	249	전주*씨 소성수 파종중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	이*하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	대표자	
21	~	637-5	전	886.2	632	국	국방부				
22	~	637	전	858.2	17	국	국방부				
23	~	644-3	임	2,569	2569	국	국방부				
24	~	639	잡	3439.1	4	국	국방부				
25	~	638-1	전	261	47	이*철	인천시 서구 신동길 **	검단농 업협동 조합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권	
								이*주	인천시 서구 신동안길 *-**		
								류*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번길 **		
								이*영	인천시 서구 신동안길 *-**		
26	~	638-3	전	93.9	93.9	국	국방부				
27	~	718	도	290.4	5	국	국토교통부				
28	~	644-1	임	136	136	이*한	-				미 등 기
29	~	644-4	전	264.7	264.7	국	국방부				
30	~	644	전	2,096	158	국	국방부				
31	~	684-78	구	353.6	5	국	국토교통부				
32	~	645-1	전	86	74	국	국방부				
33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65	구	3,061	1147.3	국	국토교통부				
34	~	21-3	전	2,205	441	국	국방부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중로2-226호선 도로개설공사(1단계)(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금곡동	662	창고	조립식	31.7㎡		이*주	인천시 서구 신동안길 ***			
			교목	D0.5	1주						
2	~	633-2	건사	철재	15.4㎡		이*나	인천시 서구 완정로**번길* *			
			정자	목재	7.8㎡						
			사무실	조립식	35.6㎡						
			창고	농막	4.2㎡						
			사무실	컨테이너	2EA						
			교목	D0.3	2주						
3	~	638-1	담장	철재	39.1㎡		이*철	인천시 서구 신동길 **			
4	~	644	가로수	D0.4	58주		국	국방부			

<input type="checkbox"/> 권리관계 <input type="checkbox"/> 토지등 누락 <input type="checkbox"/> 규격,수량 <input type="checkbox"/> 주소변경 <input type="checkbox"/> 가격관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의 견 서</b>	
1. 제 목	
2. 사업의 종류	「중로2-226호선 도로개설공사」 (1단계)
3.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4. 의 견	
5.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b>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b></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 15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2020. 7. 20.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신설에 따라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인원을 변경하여 스마트에코시티 정책구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연계된 사업부서 간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2. 주요내용

-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 당연직 구성 위원 변경 [안 제8조제2항]

- 종 전 :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 보건소장
- 변 경: 자치행정국장, 환경안전국장, 미래도시국장,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 (심곡동) 세민빌딩 3층
- 전 화 : ☎ (032)560-1957, FAX (032)560-277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4. 참고자료

- 가.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나. 의견제출서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2020. 7. 20.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신설에 따라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인원을 변경하여 스마트에코시티 정책구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연계된 사업부서 간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 당연직 구성 위원 변경 [안 제8조제2항]

종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 보건소장

변경: 자치행정국장, 환경안전국장, 미래도시국장,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개정안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76호 (2019.07.11. 제정)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 보건소장” 을 “환경안전국장, 미래도시국장,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u>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 보건소장</u>으로 구성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8조(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환경안전국장, 미래도시국장,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u>-----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574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0. 10.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2020. 8. 5.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개방주차장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됨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방주차장의 지정, 관리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코자 하며, 그 밖에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방주차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차장법」 개정사항 반영 조례 제명 변경
- 나.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지정기준 등을 규정 (안 제3조부터 제5조)
- 다. 개방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신설 (안 제6조)
- 라.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유료로 운영하는 개방주차장의 지정, 개방주차장 미지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안 제7조)
- 마. 개방주차장 관리·운영 주체, 유료운영 시 요금기준, 개방방법을 규정하고, 쾌적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무료주차장 청소관리 지원 명문화 (안 제10조)
- 바. 유료 개방주차장의 수입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및 공동주택 개방주차장의 보상금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1조)
- 사. 개방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이용제한 등 (안 제12조 ~ 안 제13조)
- 아. 개방주차장 내 위반차량 등에 대한 견인조항 규정 (안 제14조)
- 자.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등 (안 제15조)

##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주차관리과장)에게 2020. 11.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0836, FAX 032-560-2791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사항

-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발췌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2020. 8. 5.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개방주차장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됨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방주차장의 지정, 관리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코자 하며, 그 밖에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방주차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차장법」 개정사항 반영 조례 제명 변경
- 나.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지정기준 등을 규정 (안 제3조부터 제5조)
- 다. 개방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신설 (안 제6조)
- 라.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유료로 운영하는 개방주차장의 지정, 개방주차장 미지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안 제7조)
- 마. 개방주차장 관리·운영 주체, 유료운영 시 요금기준, 개방방법을 규정하고, 쾌적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무료주차장 청소관리 지원 명문화 (안 제10조)
- 바. 유료 개방주차장의 수입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및 공동주택 개방주

차장의 보상금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1조)

사. 개방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이용제한 등 (안 제12조 ~ 안 제13조)

아. 개방주차장 내 위반차량 등에 대한 견인조항 규정 (안 제14조)

자.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등 (안 제1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주차장”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이 무료 또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을 소유한 자 또는 관리하는 자(소유자의 위임·동의 등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말한다.

제3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개방주차장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개방주차장의 지정 또는 개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과 개방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방주차장 소재지 및 개방기간에 관한 사항
2.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주차면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협약사항(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거나 또는 개방기간 만료 이후 재개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개방주차장 지정 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개방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이 5면 이상일 것
2. 개방주차면을 하루 7시간, 주 5일, 2년 이상 계속 개방할 것
3.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경우 개방주차면은 일반주차면과 구분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부설주차장의 진출입 구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하는 경우
  - 나. 차량의 교행이 곤란한 도로에 접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의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주차가 원활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3.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어려운 외곽지역 또는 미개발지역인 경우
4. 부설주차장 위치, 시설의 구조·설비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방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보조·지원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개방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②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개방주차장 지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결정
2. 유료로 운영하는 개방주차장의 지정
3. 개방주차장 지정 우선순위 결정(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로

한정한다)

4. 개방주차장 미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제2호는 제외한다)
5. 개방주차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개방주차 업무담당 국장과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
  3. 주차, 교통, 도시계획, 건축, 주택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간사는 개방주차장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제10조(관리 및 운영 등) ① 개방주차장은 소유자등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

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여 개방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유료 개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3급지 요금의 범위에서 구와 소유자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방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와 이용자는 사용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
2.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개방
3. 환승주차장으로 개방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개방주차장의 깨끗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 개방주차장의 청소관리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입의 처리 등) ① 개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소유자등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범위에서 개방주차장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 안

내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표지판 규격 등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 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규격 및 구조상 주차가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자 또는 관계자가 개방주차장이 속한 시설물(부지를 포함한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6.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차량의 이동조치 등) ① 관리자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조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36조를 준용하며,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5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② 유료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와 개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개방 중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주차장법」 개정 (2020. 2. 4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주차장법	주차장법 [법률 제16951호, 2020. 2. 4., 일부개정]
<p><b>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 ⑫ (생략)</b></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b>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 ⑫ (현행과 같음)</b></p> <p>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 (이하 “개방주차장”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b>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② (생략)</b></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b>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b></p> <p>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li> <li>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li> </ol> <p>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p>

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2020. 8. 4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9호, 2020. 8. 4., 일부개정]
<신 설>	<p>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li> <li>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li> </ol> </li> <li>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li> </ol>

